#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3

발의연월일: 2021. 11. 11.

발 의 자:서범수·김은혜·김희곤

박덕흠 • 송석준 • 이양수

이채익 • 이태규 • 전봉민

최춘식 · 최형두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 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재산세를 추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항제1호 중 "3년"을 "3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1
부터 <u>3년</u> 이 경과할 때까지	3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u>5년)</u>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